

의안번호	제 46 호
의결연월일	2004. 10.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출자	사천시장
제출년월일	2004. 10. 15

법무통계담당주사 심사필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46 호
----------	--------

제출일자	: 2004. 10. 15
제출자	: 사 천 시 장

1. 의결주문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개정이유

법령 개정으로 인하여 현실과 괴리된 조항과 용어를 정비하는 한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3. 주요내용

가. 주민세의 농지세할 명칭을 농업소득세할로 변경

나. 인 용 관 련 법 령 명 정 비

- 도시계획법 ⇒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 자동차운수사업법 ⇒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
- 도시재개발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다. 기타 관련법령의 인 용 조 항 과 용 어 를 정 비 함

4. 주요토의과제 : 없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발췌 : 따로 붙임

나. 예산조치: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기획담당관실

라. 기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따로 붙임
- 2) 입법예고(2004. 9. 1 ~9. 23)결과 제출된 의견없음

사천시세조례중개정조례안

사천시세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 한다.

제1조중 “사천시세” 를 “사천시세(이하 “시세”라 한다)” 로 한다.

제20조제2항제3호중 “농지세할” 을 “농업소득세할”로 하고, “농지세액” 을 “농업소득세액”으로 한다.

제22조의2제3항중 “말일” 을 “15일”로 한다.

제27조제1항제1호(3)목중 “도시계획법” 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로 한다.

제37조제2항중 “자동차운수사업법” 을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으로 한다.

제40조의4제2호중 “제141조의2”를 “제248조”로 한다.

제42조중 “법제200조”를 “법제201조”로 한다.

제43조중 “법제201조”를“법제202조”로 한다.

제45조제2항중 “영 제156조”를 “영 제152조”로 하고, 같은조제3항중 “영 제169조” 를 “영 제153조”로 한다.

제47조제1항중 “영 제167조” 를 “영 제157조”로 한다.

제48조를 삭제한다.

제49조중 “영 제166조” 를 “영 제156조”로 한다.

제50조제1항중 “영 제164조” 를 “영 제154조”로 한다.

제51조제1항 및 제2항 중 “시·읍·면” 을 각각 “시”로 한다.

제61조제2항제3호중 “환급을” 을 “환부를”로 한다.

제72조제2항제6호중 “도시재개발법” 을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 한다.

현행	개정안
<p>제37조 (과세표준과 세율) ①(생략)</p> <p>②제1항에서 “영업용”이라 함은 <u>자동차운수사업법에 의하여 면허(등록을 포함한다)를 받거나 건설기계관리법에 의하여 건설기계대여업의 신고를 하고 일반수요에 공하는 것을</u> 말하고 “비영업용”이라함은 개인 또는 법인이 영업용 이외의 용에 공하거나 국가 또는 지방공공단체가 공용으로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p>	<p>제37조 (-----) ①(현행과 같음)</p> <p>②-----<u>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및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u>-----</p>
<p>제40조의4 (신고 및 납부) 주행세 납세의무자가 주행세를 신고하고 납부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여 특별징수의무자에게 주행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하고 대통령령이 정하는 납부서에 의거 당해 시금고에 납부하여야 한다.</p> <p>1.(생략)</p> <p>2.교통세법제7조제2항 또는 제3항 및 동법제8조의 규정에 의하여 교통세를 신고하고 납부하는 경우에는 관세법 <u>제141조의2</u>의 규정에 의한 신고필증사본</p>	<p>제40조의4 (-----)</p> <p>1.(현행과 같음)</p> <p>2.-----<u>제248조</u>-----</p>
<p>제42조(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신청) <u>법 제200조</u>의 규정에 의하여 농업소득세를 비과세 받고자 하는 자는 시행규칙 <u>제83조제1항</u>의 규정에 의한 신고서식에 의하여 그 농지의 소재지,지번,지목,면적,용도,농업소득금액,비과세 받고자하는 사유 기타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서류를 갖추어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p>	<p>제42조(-----) <u>법 제201조</u></p>

현 행	개 정 안
<p>제47조 (농지 및 재배시설의 변경신고등) ①농 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종자 또는 작물을 재배하는 시설의 소유권의 변경 기타 이와 유사한 사항으로서 영 제167조에서 정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항을 기재한 신고서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 내에 작물의 재배지를 관할하는 시장에게 신 고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47조 (-----) ① ----- ----- ----- 영 제157조 ----- ----- ----- ----- ----- ----- -----</p> <p>② (현행과 같음)</p>
<p>제48조 (중간예납) ①영 제162조의 규정에서 '연 2회 시 조례로 정하는 기간' 이라함은 다음 각호와 같다.</p> <p>1. 제1기분 : 1월 1일부터 7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8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p> <p>②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제1항에서 규 정한 납기내에 발생한 농업소득을 근거로 시 장이 산출하여 통지한 농업소득세액을 다음 기간에 중간예납 하여야 한다.</p> <p>1. 제1기분 : 8월 16일부터 8월 31일까지 2. 제2기분 : 12월16일부터 12월31일까지</p>	<p><삭제></p>

현행	개정안
<p>제49조 (수시부과) 수시로 부과하는 농업소득세는 중간예납이나 확정신고에 불구하고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수시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부과기간으로 하여 영 제166조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통징수방법에 의하여 징수한다.</p>	<p>제49조(-----)----- ----- ----- -----영 제156조----- ----- -----.</p>
<p>제50조 (신고와 납부) ①농업소득세의 납세의무자는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5월 31일까지 영 제164조에서 정하는 바에 의하여 당해 과세기간중의 농업소득금액을 시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p> <p>②(생략)</p>	<p>제50조(-----) ①----- ----- 영 제154조----- ----- -----.</p> <p>②(현행과 같음)</p>
<p>제51조(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읍·면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p> <p>②농업조사위원회는 당해 시·읍·면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p> <p>③ ~ ④(생략)</p>	<p>제51조 (-----) ①----- ----- ----- 시----- ②-----시----- ----- -----.</p> <p>③ ~ ④(현행과 같음)</p>

현행	개정안
<p>제61조 (가산세) ①(생략)</p> <p>②다음 각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산출세액 또는 부족세액의100분의3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수하여야 할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한다.</p> <p>1. ~ 2.(생략)</p> <p>3.부정한 방법으로 법 제233조의9의 규정에 의한 세액의 공제 도는 환급을 받은 경우</p> <p>4.(생략)</p> <p>③(생략)</p>	<p>제61조 (-----)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p> <p>1. ~ 2.(현행과 같음)</p> <p>3.-----</p> <p>-----환부를-----</p> <p>4.(현행과 같음)</p> <p>③(현행과 같음)</p>
<p>제72조 (납세의무자) ① (생략)</p> <p>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종합토지세 과세 기준일 현재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종합토지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p> <p>1. ~ 5.(생략)</p> <p>6.도시개발법에 의하여 시행하는 환지방식에 의한 도시개발사업 및 도시재개발법에 의한 재개발 사업의 시행으로 그 사업에 필요한 경비로 충당하거나 사업계획 등이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환지계획에서 일정한 토지를 환지로 정하지 아니하고 체비지 또는 보류지로 정한 사업시행자</p> <p>②(생략)</p>	<p>제72조 (-----) ①(현행과 같음)</p> <p>②-----</p> <p>-----</p> <p>-----</p> <p>1. ~ 5.(현행과 같음)</p> <p>6.-----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p> <p>-----</p> <p>-----</p> <p>-----</p> <p>②(현행과 같음)</p>

관계법령발취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제1조 (목적) 이 법은 도시기능의 회복이 필요하거나 주거환경이 불량한 지역을 계획적으로 정비하고 노후·불량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개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도시환경을 개선하고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관세법

제248조 (신고의 수리) ①세관장은 제241조 또는 제244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가 이 법의 규정에 적합하게 이루어진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수리하고 신고인에게 신고필증을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제32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를 수리하는 경우에는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인이 직접 전산처리설비를 이용하여 신고필증을 교부받을 수 있다. <개정 2002.12.18>

第234條의16 (稅率) ①第234條의15第2項의 規定에 해당하는 土地의 綜合土地稅는 다음의 稅率을 適用하여 計算한 金額을 그 稅額(이하 "綜合合算稅額"이라 한다)으로 한다.<개정 1990.4.7>

지방세법

제201조 (용도구분에 의한 비과세) ①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한다.

1. 학교·고아원·양로원·수녀원·사찰·교회 등이 학술·시험·학습 또는 자가소비용에 사용하기 위하여 직접 경작하는 경우의 농업소득
2. 산림조합법에 의하여 설립된 산림조합(산림계를 포함한다) 또는 산림조합중앙회가 경작하는 산림용 묘목밭에서 생기는 농업소득
3. 그 밖에 제1호 또는 제2호와 유사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농업소득

제202조 (개간·간척 등에 대한 비과세) ①공유수면매립법 등 관계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개간·매립·간척 등의 인가·허가 등을 받아 조성한 농지(지적공부상의 지목에 불구하고 작물을 재배하는 토지를 말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에서 발생하는 농업소득에 대하여는 농지조성에 소요된 공사비 등을 감안하여 영농을 개시한 해부터 10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농업소득세를 부과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213조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설치) ①수입금액·농업소득금액 그 밖에 농업소득세의 부과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조사하기 위하여 시·군에 농업소득조사위원회를 둔다. <개정 2002.12.30>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조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③농업소득조사위원회에 대하여는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

④농업소득조사위원회는 당해 시·군안의 납세의무자 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그 직무상 필요한 사항을 질문하거나 조사할 수 있다. <개정 2002.12.30>

지방세법시행령

제152조 (수입금액의 계산방법 등) ①법 제20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금액의 범위는 작물을 수확하여 판매한 경우의 수입금액(미수금을 포함한다)과 작물을 수확하였으나 판매하지 아니하였거나 수확한 작물을 원료로 제품을 제조·가공하여 판매하는 경우에는 수확당시의 거래시가에 의한 금액의 합계액으로 하며, 그 계산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제153조 (필요경비의 종류 및 계산방법 등) ①법 제20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필요경비의 종류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제154조 (신고와 납부) ①법 제20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금액의 신고는 작물재배지·작물명·경작면적·수입금액·필요경비 및 소득금액 등을 기재한 신고서에 의한다.

제156조 (수시부과) ①법 제210조제1항제3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유"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법 제26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한 농업소득세액의 결정후 당해 농업소득금액에 대한 탈루 또는 포탈이 있음이 확인된 경우

②법 제21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시부과를 하는 경우에는 법 제206조의 규정에 의한 산출세액을 그 세액으로 하여 징수한다. 다만, 법 제210조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해당하는 경우 그 수시부과세액의 산정과 관련한 기초공제액은 법 제204조제4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월할계산방식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01.12.31>

[전문개정 2000.12.29]

제157조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 등의 변동신고) 법 제211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변경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1의 경우를 말한다.

1. 작물재배지 및 재배시설의 경작자가 변동된 경우
2. 작물의 재배지가 다른 용도로 변경되거나 다른 용도의 농지 또는 시설이 작물의 재배지로 변경된 경우
3. 과세지가 비과세지로 되거나 비과세지가 과세지로 변동된 경우

[전문개정 2000.12.29]